

경운대학교 교육만족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경운대학교 대학운영 개선 및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 및 개선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만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회 대표 및 학생회 대표를 포함한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2. 각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담당한다.

제3조(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후임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만족도 조사 계획의 검토, 조정 및 심의
2.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지 문항의 검토, 조정 및 심의
3.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의 심의 및 보완 요청
4. 기타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

제6조(특별위원회) 위원회는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이 담당한다.

제7조(특별위원회의 기능) 제6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직원으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지의 검토 및 개선에 대한 세부사항
2. 교육만족도 조사결과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3.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분석보고서의 검토에 관한 세부사항
4. 기타 교내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 관련 세부결과 검토

제8조(교육만족도 조사 실시) 교육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1. 위원장은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요청에 따라 대학발전추진단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는 학부(과)평가, 부서평가, 학부(과) 및 부서 예산편성 등 제반업무의 수행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제출을 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개선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전의 교육만족위원회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